

취재현장의 메커니즘과 취재윤리 (Ⅱ)

류 순 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장

- 고려대 무역학과 졸업
- 세계일보 공채 4기
- 재정경제부, 국회 등 출입
- 현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장

1. 반성과 변명

언론중재위원회의 원고 청탁은 지난 14년간의 기자 생활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였다. 나에게 취재윤리는 무엇이었던가. 취재 과정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가, 아니 그런 인식이라도 있기는 있었던가.

고백하건대 적잖은 시간을 취재 현장에서 보내는 동안 취재 윤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취재 윤리를 위반하면서도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정도 윤리 위반쯤이야...”.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라는 대의명분은 든든한 방패이자 핑곗거리였다. 보다 높은 가치 실현을 위해 작은 가치는 희생시킬 수 있다는 단순 논리는 취재 과정의 윤리위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잊게 했다. 하지만 돌아켜보니 그건 그야말로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는 명분 뒤엔 언제나 ‘특종 욕심’이 뿌리를 틀고 있었다. 기자가 특종 욕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윤리위반을 동반하

는 특종 욕심이 늘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청 취재와 공익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취재윤리를 처음으로 꼼꼼히 뒤져봤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취재준칙)를 보니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조항이 눈에 띄었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낯 뜨거운 기억이 있다.

1995년 가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였다. 기자들의 관심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친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거물들에게 쏠려 있었다. 누가 얼마를 줬는지, 오늘 누가 소환되는지 등 기자들은 연일 검찰에 소환될 새로운 이름들을 알아내려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자들의 취재 경쟁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환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실에서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서초동 서울지검검사 곳곳에서 펼쳐졌다. 4년차 기자인 나에게 할당된 임무는 서울지검장실을 지키는 것이었다. 검찰의 공식 브리핑 내용만으로는 기사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검장 부속실에 죽치고 앉아 보고를 위해 드나드는 '차장검사'나 어쩌다 마주치는 검사장에게 몇 마디라도 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판 마감 뒤 서울지검장실에 올라갔더니 부속실 계장이 "차장 세분과 회의중"이라고 했다. 마침 타사 기자들은 없었다. 동행한 H사 후배 기자에게 긴급 제안을 했다. "마침 다른 기자들이 없으니 계장과 얘기를 나누며 시선을 붙잡아줘라. 난 벽에 귀를 대고 회의 내용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었다. 즉 "난 검찰 간부들 얘기를 도청할 테니 넌 바람을 잡으라"는 얘기였다. 그 순간 우리는 명백한 공범이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 공모한 뒤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계장과 잡담을 시작했고 난 복도에 세워진 자주색 통제선을 넘어 복도 쪽으로 연결되는 지검장실의 옆문을 귀를 붙였다.

5분쯤 지났을까. 낮게 깔리는 음성들 사이로 어렵 뜻이 몇몇 익숙한 이름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드리운 낚싯대에 고기가 걸려 팽팽한 손맛을 느낄 때처럼 짜릿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온 신경은 문 너머로 오가는 대화에 쏠렸다. 그 때였다. 정적을 깨듯 "내 이럴 줄 알았어"라는 노기 띤 목소리가 컷전을 때렸다. 계장이 눈치를 채고 뛰어나온 것이다. 그는 슬리퍼 차림에도 날렵하게 자주색 통제선을 뛰어넘어오더니 우악스럽게 먹살을 움켜쥐었다. 갑작스런 소란에 놀란 검찰 간부들은 옆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고 나는 얼굴이 벌게진 채 계장의 손을 뿌리치고 정신없이 자리를 피해야 했다. 그때의 당혹감과 창피함이라니. 그 뒤로 한동안 나는 지검장실에 발길을 끊었다.

선배는 "취재하다 그런 건데 뭐 어쩌냐"고 했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취재 현장에서 도청은 하지 않는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도청

에 의한 기사 작성이 공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자각 때문이다. 그 때 검찰 수사 내용을 무사히 도청한 뒤 이를 기사화했다면 어찌 됐을 것인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수사 내용을 기사화해 수사 차질을 빚고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 기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사인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될 뻔한 순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계장 덕분에 화를 막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서울지검장실 도청 미수 사건'은 낮 뜨겁지만 값진 교훈을 남겼다.

응급실 취재와 환자의 안전

'기자는 병원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준칙 ③ '병원 등 취재' 조항에서도 걸리는 기억이 있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취재과정에서다. 사고 다음날 오전 20대 초반의 식품매장 여직원 권모 씨가 폭삭 무너진 백화점 잔해 더미에서 극적으로 구조돼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순식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응급실은 통제됐고 기자들은 그 앞에 진을 쳤다. "그 여직원 얘기를 어떻게든 초판에 실어야 해!" 데스크의 주문은 단호했다. 그러나 몇 마디라도 듣지 않고 기사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기회를 엿보다 의료진이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용케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진부 선배는 내가 응급실로 들어가자 건물 밖에서 창문을 통해 카메라를 건넸다. 서둘러 침상에 누워있는 권 씨의 얼굴 사진을 찍고 취재를 시작했다. 짧은 시간 권

취재와 기사작성은 성공적이지만
취재과정이 떳떳하지 못하면
문제될 수 있어

씨는 태풍같은 바람을 맞으며 주류판매대와 함께 넘어진 뒤 칠후 속에 갇혀 15시간을 견딘 과정을 힘겹게 얘기했다. 밖에서 진을 치던 타사 기자들의 향의로 얼마 되지 않아 의료진에 의해 쫓겨났지만 그날 초판 신문에 권 씨 구조 스토리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취재와 기사작성은 성공적이었지만 취재 과정은 떳떳하지 못했다.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 응급실에 침입한 점이 그렇고, 권 씨의 허락 없이 카메라를 눌러대고 취재를 한 점이 또한 그렇다. 한마디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권 씨의 건강과 치료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런 방식의 취재로 당시 권 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지만 경우에 따라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취재 방식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신분사칭과 이정연 몸무게 특종

취재윤리 위반이 늘 후회와 반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또 다시 그 상황이 닥쳐도 그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변명거리도 없지 않다.

1997년 대선을 세 달 남짓 남겨둔 7월 29일 오후, 시경 캡의 지시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장남 정연 씨를 인터뷰하려 양재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찾았다. 이 대표의 두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비슷한 시간, 같은 목적으로 타사 기자들도 하나 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로비에 나타났다. 하지만 정연 씨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연구원측 설명이 정연 씨가 전날 사무실에 잠시 들러 “휴가를 가야겠다”고 말한 뒤 29일 출근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회사에 보고한 뒤 하나 둘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가기가 웬지 억울해 자리를 뜨지 않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직원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였다. 1983년에 키 179센티미터 몸무게 55킬로그램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정연 씨는 미국 유학 후 1991년 신체검사에서 몸무게 45킬로그램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의 몸무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건강검진을 시행한 병원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하느냐”는 물음에 “서초동의 주클리닉”이라고 말해줬다. 주클리닉은 임창렬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문제는 건강검진 기록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이었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신분사칭이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주클리닉에 전화를 걸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건강검진 담당자인데요, 검진 기록을 확인하게 있어서요”. 신분 사칭은 성공적이었다. 전화를 받은 병원 직원은 의심 없이 몇 분 뒤 6월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정연 씨의 키와 몸무게를 알려줬다. 취재내용은 30일자 세계일보 사회면에 ‘병역기피 논란 이회창 대표 장남 최근 몸무게는 58킬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이는 정연 씨 몸무게를 둘러싸고 주장과 의혹만이 난무하던 당시, 보다 진실에 접근해가는 거의 유일한 팩트였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정연이는 유학시절 고생해 몸무게가 많이 줄었으며 지금도 51킬로그램 정

도”라고 밝혔었다.

당시 이 기사는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기여한 기사였다고 지금도 자평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를 과연 신분을 사칭하지 않고 취재해 작성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신분사칭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원칙적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신분사칭·위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시 정연 씨 몸무게 취재를 위한 신분사칭은 이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2. 현장에서 느끼는 취재윤리

앞에서 10여년 기자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세 가지 윤리 위반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같은 사례가 기자 개인의 경험만은 아니다. 특종을 쫓는 기자들 누구라도 도청, 신분사칭에서부터 강압적 취재, 함정 취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뒤통수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 취재한 경험이 적어도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실제 과거 취재현장에서 만난 동료 기자들 중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수사 중인 검사방에서 수사자료를 훔치려다 들켜 범정에 서야 했던 이들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검사방에 침입해 자료를 훔치려 했을 정도면 ‘특종 의욕’에 사로잡혀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마비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해당 언론사를 중심으로 언론계의 분위기는 ‘기자 감싸기’로 흘렀다.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취재윤리 위

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설 자리가 없었다. 기자는 그저 열심히 취재하다 ‘재수 없게’ 걸린 것으로 인식되기 십상이었다. 방법이야 어찌 됐든 특종만 하면 된다는 인식의 결과였다.

물론 이처럼 극단적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진실 확인을 위해 어느 정도의 취재윤리 위반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잖다. 10년 전 사건기자 시절이었다. 야근을 하는데 TV방송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국에 물어보니 공중파 방송을 중계하는 남산 송신소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야근 기자 집결지인 강남경찰서 기자실에서 경쟁적으로 취재가 시작됐다. 모두들 마감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현장으로 달려가기에 앞서 전화기부터 들었다.

A기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일보 기자인데요, 송신탑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가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한마디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어 B기자가 전화를 걸었다. “저 ××신문 기잔데요”, “에이 참 바쁜데...”. 송신소 관계자는 짜증을 내며 기자가 질문하기도 전에 냅다 끊어버렸다.

이어 C기자가 전화를 걸어 낮은 음성으로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나 안기부(현 국정원) 김 부장인데 거기 무슨 일이요”, “아, 예...”. 송신소 관계자는 그 제서야 사고 원인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했고 기자들은 기사 1보를 회사로 보낼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짓게 하는 이 장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촉박한 마감 시간에 맞춰 신분을 사칭해서라도 사실을 확인해 기사를 써 보내야 하는 기자들의 급박한 현장 상황을 실감케 한다. 이처럼 취재 현장에서는 기사를 쓰기 위해 원칙적인 취재 윤리를 위반하는 일이 과거에도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숨기고 싶어 하는 사건이나 정보를 파헤치는 탐사보도가 언론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엔

취재 윤리 위반이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

‘함정 취재’나 ‘몰래 카메라’, ‘강압적 취재’ 같은 탈·불법적 방법들이 동원되는 현실이다.

대개의 경우 기자들은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주장을 완전하게 부인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취재 윤리 위반이 관성화하면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현장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 윤리 위반이 불가피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성·타성에 젖어 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취재 윤리 위반이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려면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타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에서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순이 결코 쉽게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실 추

구를 위한 취재 윤리 위반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취재방법이 정말 없었는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 윤리를 위반하지 않고도 취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과정을 거친 뒤 어쩔 수 없이 진실 확인을 위해 취재 윤리를 위반했을 때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취재 윤리는 기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준다. 취재 과정에서 벌어지는 탈·불법적 행위 자체가 기사의 본질과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며 기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사례는 심심찮다. 진실 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은 ‘진실한 취재’를 통해 이뤄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은 원론이다. 이런 원칙론 위에서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계기가 필요할 듯하다. □